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적용안내

성녀 모니카의 집 요양원

Ⅰ.기본정보

기관명	성녀모니카의집요양원	**설치일자**	2014.12.05
급여종류	시설급여	**입소정원**	73명
대표자	강은경	**협력의료**	사랑병원
주소	인천 남동구 만수서로 37번길 81	**장기요양기관기호**	12820000356
비급여항목	**식사재료비** 1식 4,000원(1일 12,000원)/ **간식비** 1일 2000원/ **상급병실비** 1일 6000원		
시설규모	연면적 1,776.78㎡ (지하 331.28㎡ 1층~4층 350.195㎡ 5층 44.72㎡)		
홈페이지 주소	https://blog.naver.com/saint10041	**전화/ fax**	032-471-5880/ 032-461-5880

Ⅱ.입소정원 및 입소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73명 **(입소대상) :** 장기요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
2. **입소자 모집방법 :** 입소정원 내에서 전화상담, 벼룩시장 또는 기관홈페이지 및 지역사회 홍보 등을 통한 시설방문으로 상담하고, 관련 서류 확인 후 입소인 및 신원인수인의 계약으로 모집한다.

Ⅲ.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제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하거나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신원 인수인 (보호자)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생활공간에 안전성을 요구하고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하여 알 권리,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식재료비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배상책임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한다.
시설급여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의료서비스	인천사랑병원에서 협력의사가 월 2회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조치,필요시 외래진료
특별보호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시설물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서는 원상 복귀 한다.

[운영규정개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운영규정을 준수합니다]

①조직·인사·급여·물품 규정
②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입소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 해체 등에 관한 사항)
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⑤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⑥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⑦의료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의 장은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Ⅳ. 종사자근무체계

(1) 직종별 직원배치 인력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촉탁협력의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1	1명 (50명 이상)	1명 이상	1	1명 이상	입소자 2.5명당 1명	입소자2.1명 or 2.3명당 1명	1명 (50명 이상)	1명	입소자25명 당 1명	1명	1명 (50명 이상)

(2) 주/야간 종사자 인력 : 주/야간 인력 : 주간 – 20명 내외/ 야간 – 6명 내외 – 2.1명당 1명

[평, 휴일 상관없이 근무편성표에 따라 근무하며, 변동가능]

Ⅴ. 장기요양등급별 시설급이용료(본인부담금+비급여) (2026년 1월 1일 기준)-2.1:1 기준 (30일 기준)

시설급여	수가	월급여액	본인부담금(20%)	비급여(식재료비+간식비)	본인부담금+비급여
1등급	93,070	2,792,100	558,420	420,000	978,420
2등급	86,340	2,590,200	518,040	420,000	938,040
3등급	81,540	2,446,200	489,240	420,000	909,240

장기요양등급별 시설이용료(본인부담금+비급여) (2026년 1월 1일 기준)-2.3:1 기준 (30일 기준)

시설급여	수가	월급여액	본인부담금(20%)	비급여(식재료비+간식비)	본인부담금+비급여
1등급	88,520	2,655,600	531,120	420,000	951,120
2등급	82,120	2,463,600	492,720	420,000	912,720
3등급	77,540	2,326,200	465,240	420,000	885,240

Ⅵ. 시설 면적 및 사용내용

구분	면적[1,776.78㎡]	내용
지하	331.28㎡	다용도실, 펌프실, 물탱크실, 등
1층	350.195㎡	사무실, 상담실, 주방, 물리치료실, 자원봉사자실, 창고, 장애인화장실, 휴게실, 1인실, 특별침실, 세탁실
2층	350.195㎡	생활실, 간호사실, 목욕실, 세탁실, 프로그램실
3층	350.195㎡	생활실, 간호사실, 목욕실, 세탁실, 프로그램실
4층	350.195㎡	생활실, 간호사실, 목욕실, 세탁실, 프로그램실
5층	44.72㎡	다용도실(창고), 하늘정원2
6층	야외옥상층	하늘정원1

Ⅶ. 시설현황

구분	1인실	2인실	4인실	특별침실	사무실	간호사실	식당/조리실	물리치료실	세면장 목욕실	화장실	프로그램실	세탁장 건조장
시설	1	6	15	1	1	3	1	1	3	14	4	1

Ⅷ. 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내용 및 기타사항

구분	상품명	보험회사명
시설배상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화재보험	일반화재보험	DB손해, 현대해상화재보험
가스사고배상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도시가스] : 대인대물	DB손해보험
재난방지시설	화재경보기, 자동화재속보기, 가스누출경보차단기,화재자동계폐문장치, 배연창, 스프링클러, 캡스출입통제	

Ⅸ. 방문 진료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1) 협력병원 : 인천 사랑병원

2) 외래진료: 시설장→보호자 연락→간호사(사회복지사) 동반

3) 원거리(3차병원)진료 : 시설장→보호자 연락→간호사(사회복지사) 동반

4) 응급상황발생 시 : 시설장→현장상황(간호 응급처치 및 119응급구조요원 처치와 동시에 보호자 연락)
→협력병원 이송 또는 가까운 응급센터 이송